

「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실태조사 연구」 용역사업 공고

「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실태조사 연구」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.11.13.

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

- 다 음 -

1. 연구용역사업 과제

가. 사업명 :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실태조사 연구

나. 배경 및 목적

- 치과위생사 법적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치과의료 현장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파악하고자함
- 법적 업무의 포괄적 의미에 대한 조사
- 법적 업무로 판단이 모호한 업무의 파악과 구분 필요
- 향후 미래 지향적인 법적업무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
다. 연구의 주요 내용

- 치과의료기관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
- 치과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들의 실제 업무 및 업무 비중
-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 업무의 비교 분석
-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인지도
- 미래 지향적인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견해

라. 시행기간 :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

마. 수행 용역비 : 20,000천원 이내

2. 연구수행 자격 및 제한

가.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

1) 연구기관의 경우

- 국·공립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-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 의료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
-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

2) 연구책임자

- 본 협회 등록정회원(평생회원 포함)인 자
- 주관·세부·협동·위탁·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·협동·위탁·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
- *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, 임기만료,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

나. 연구 참여자 자격

- 1) 치위생학, 치의학, 보건학 등 보건의료분야에 박식하고 연구능력을 갖춘 자
- 2) 치과위생사를 50% 이상 구성하되 치과위생사는 협회 등록 정회원 또는 평생 회원이어야 함

3. 연구 신청서 제출

가.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작성

- 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,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
-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협회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
- 제안서 전체 분량은 50페이지 이내 (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)
-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
-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(둘째자리에서 반올림)
-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
- 반드시 면수(Page)를 기재

나. 신청서 제출

- 1) 제출 기한 : 2019. 11. 29.(금) 18:00
- 2) 제출 서류 : 연구과제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(붙임 참조) 각 1부
- 3) 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 접수 중 택일
 - 방문이나 우편접수 시에도 신청서는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
 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제출자는 본 협회의 평가절차와 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 - 제출서류 서명날인 필수
- 4) 제출처 : 대한치과위생사협회
 - 주소 : (02465)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66 치과위생사회관
 - 전화 : 02-6213-2734 (담당자 : 강보람 과장)
 - E-mail : policy@kdha.or.kr
- 5) 연구수행자 선정 : 심의 선정 후 개별 통보
- 6) 연구결과보고 및 결과제출 : 연구 종료 15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 또는 완료 즉시 연구보고서 별쇄본 및 PDF 파일 제출